

교류협력 절차 안내서

2026년판

북한 주민 접촉부터 방북, 물품 반출·반입, 협력사업까지.
처음 준비하는 기업·단체·개인이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안내서를 보는 방법

남북 교류협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고와 승인을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그 순서와 준비 서류를 한 권에 모은 것입니다.

신고와 승인의 접수·심사는 모두 통일부가 맡고, 제출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tongton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센터는 그 전 단계, 곧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가려내고 서류를 준비하는 일을 돕습니다. 센터가 신고를 대신 접수하거나 심사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1. 절차 한눈에 보기	3
2. 북한주민 접촉신고	4
3. 방북 승인	5
4. 물품 반출·반입 승인과 대북제재 검토	6
5. 협력사업 승인	7
6. 남북협력기금	8
7. 법정 서식 목록	9
8. 준비 점검표와 문의처	10

먼저 알아 두실 점

이 안내서는 2026년 6월 기준 법령과 통일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의 안내이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과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통일부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절차 한눈에 보기

어떤 사업이든 큰 흐름은 같습니다. 제재에 걸리는지 먼저 보고, 접촉을 신고하고, 필요한 승인을 받은 뒤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STEP 1 사전 검토 사업 형태·품목의 제재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STEP 2 접촉신고 접촉 전에 신고하고 수리 통지를 확인합니다.	STEP 3 승인 방북·반출입·협력사업 등 해당하는 승인을 받습니다.	STEP 4 사업 실행 승인 조건을 지키고, 내용이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STEP 5 결과 보고 보고 의무가 있으면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	--	--	--	--

내 경우에 필요한 절차

준비하는 일	필요한 절차	본문
북한 주민과 연락하거나 만나다	북한주민 접촉신고 (이메일·전화·서신·화상회의·제3국 대면 모두 포함)	4쪽
북한을 방문한다	방북 승인. 초청 의사를 확인할 문서가 없으면 접촉신고부터	5쪽
물품을 보내거나 받는다	반출·반입 승인. 품목이 애매하면 대북제재 검토를 먼저	6쪽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구상 단계는 상담과 접촉신고, 합의가 있으면 협력사업 승인	7쪽

절차별 준비 서류와 처리 기간

절차	주요 준비 서류	처리 기간
접촉신고	접촉신고서, 접촉 목적·계획서, 상대측 정보 자료	통상 7일 내외
방북 승인	방문승인신청서, 방문 목적·일정표, 초청 관련 자료	방문 7일 전까지 신청
반출·반입 승인	반출입승인신청서, 품목 명세, 계약 관련 서류, 제재 검토 자료	통상 7일 내외
협력사업 승인	협력사업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자원 조달 계획, 상대측 합의 자료	통상 20일 내외

소관 창구는 네 절차 모두 동일부이며, 제출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tongtong.go.kr)에서 합니다.

북한주민 접촉신고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9조의2). 대부분의 교류협력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근거 법 제9조의2	서식 별지 제9호서식	처리 기간 통상 7일 내외
----------------------	-----------------------	--------------------------

신고 대상

이메일·전화·서신 같은 통신 접촉, 제3국에서의 대면 접촉, 화상 회의까지 방식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전반이 대상입니다. 이산가족 교류 등 일부는 예외나 간소화 대상일 수 있으며, 가족 관계 증빙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진행 순서

- 1 사전 상담** — 접촉 목적과 방식을 정리하고, 신고 대상인지와 대북제재에 걸리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 2 신고서 작성** — 접촉 목적, 대상, 방법, 기간을 적고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 3 온라인 제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전자 제출합니다.
- 4 수리 통지 확인 후 접촉** — 신고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 접촉합니다.
- 5 결과 보고** — 수리 조건에 결과 보고 의무가 있으면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냅니다.

자주 놓치는 점

- 방북이나 협력사업을 위한 사전 협의도 접촉입니다. 초청장을 받기 위한 연락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없이 진행한 협의는 뒤에 승인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접촉이 더 필요하면 만료 5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냅니다.

방북 승인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9조). 신청에는 북측 상대방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 제9조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신청 시한 방문 7일 전까지
--------------------	-----------------------	---------------------------

초청 문서가 있는 경우

- 1 구비 서류 준비 — 초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방문 목적과 일정표.
- 2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작성 — 별지 제1호서식.
- 3 온라인 제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4 승인 후 — 방북 교육을 이수하고 방문증명서를 받습니다.
- 5 방문 후 — 북한방문결과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합니다.

초청 문서가 아직 없는 경우

- 1 접촉신고 — 수리된 뒤 북측과 방북 일정과 초청을 협의합니다.
- 2 초청 의사 확인 문서 확보
- 3 방북 승인 신청 — 위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참고

방문 목적에 따라 별도 협의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신청 시한(방문 7일 전)보다 넉넉히 앞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반출·반입 승인과 대북제재 검토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거나 북한에서 들여오려면 품목, 거래 형태, 대금 결제 방법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3조). 인도적 물자도 같습니다.

근거 법 제13조	서식 별지 제16호·제19호서식	처리 기간 통상 7일 내외
---------------------	-----------------------------	--------------------------

일반 물품

- 1 품목·수량·용도 명세 준비 — 반출입 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에 담습니다.
- 2 반출입 승인 신청서 작성 — 별지 제16호서식. 계약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3 온라인 제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4 승인 후 세관 절차

일반 물품이라도 수량과 용도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목이 제재에 걸리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 1 품목 정보로 사전 상담 — 전략물자와 유엔 안보리 제재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2 저촉 없음을 확인한 뒤 반출입 승인 신청
- 3 필요하면 제재 면제 절차 확인 — 인도적 사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주의

제재 품목을 승인 없이 반출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품목이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재 해당 여부의 최종 판단은 통일부 등 소관 기관이 합니다.

협력사업 승인

남북이 함께 하는 경제·사회문화 분야 사업은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7조). 사업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근거 법 제17조	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처리 기간 통상 20일 내외
---------------------	------------------------	---------------------------

구상 단계

- 1 **상담** — 사업 구조를 정리하고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계획을 세웁니다.
- 2 **접촉신고 후 복측과 협의**
- 3 **합의가 진전되면 승인 신청 준비**

처음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승인 절차의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합의가 있는 단계

- 1 **사업계획서와 합의 문서 정리** — 자원 조달 계획, 상대측 합의 자료를 포함합니다.
- 2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작성** — 별지 제29호서식.
- 3 **온라인 제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4 **승인 후 후속 절차** — 사업에 필요한 반출입 승인, 방북 승인을 함께 진행합니다.

참고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더라도 물품을 보내려면 반출·반입 승인을, 현장을 방문하려면 방북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사업 내용이 바뀌면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다시 확인하세요.

남북협력기금

교류협력 사업의 자금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정부 기금으로, 통일부 장관이 운용하고 실무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맡습니다.

지원 항목	내용	창구
교역·경제 협대출	교역 자금, 경제협력 사업 자금의 융자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손실보조 (경제 협대출)	사업 중단 등으로 생긴 손실 일부를 보전	한국수출입은행
인도적 사업 지원	구호, 식량·보건의료·식수위생 협력, 재난·기후위기 대응 등	인도협력시스템 (hairo.unikorea.go.kr)
사회문화 교류 지원	학술·문화·체육 등 비영리 교류 사업의 경비 일부	인도협력시스템

인도적 사업 지원 요건

-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두는 등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남북 왕래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 한도: 연 3회 이내,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지원되지 않는 경우

- 이미 실행 중인 인도적 사업과 중복
- 경제적 이익이 목적
- 단순 일회성 지원
- 경제협력·사회문화 행사에 부속된 지원
- 사업 현장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에서 집행까지

- 1 신청** — 인도협력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입력하고 사업·사용계획서, 자체 재원, 분배투명성 계획 등 서류를 올립니다(상시 접수).
- 2 서면·대면 평가** — 기금지원심사위원회 심사.
- 3 사업 협의** — 통일부와 사업 내용을 조율합니다.
- 4 지원 결정**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 5 집행·정산** — 사업 진도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2026년 기금은 1조 23억 원 규모입니다(국회 확정 예산, 2025. 12. 2.). 지원 요건과 한도는 연도별 운용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통일부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법정 서식 목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가운데 자주 쓰는 8종입니다. 센터 자료실 (ikecc.org/library)에서 HWP와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번호	서식명	쓰는 때
제9호서식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연락하기 전
제11호서식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접촉 후 결과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
제12호서식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제1호서식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방북 승인을 신청할 때
제6호서식	북한방문결과보고서	방북을 마친 뒤
제16호서식	반출입 승인 신청서	물품을 보내거나 받기 전
제19호서식	반출입 계획서	품목과 용도 명세를 첨부할 때
제29호서식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와 함께)

서식 확인

서식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제출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현행 서식인지 확인해 주세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입력 양식을 따릅니다.

준비 점검표와 문의처

상담이나 신청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 ☐ 무엇을 하려는지 한두 문장으로 적었다 (접촉 / 방북 / 물품 반출·반입 / 협력사업)
- ☐ 북측 상대방이 누구인지(기관·단체명, 담당자), 지금까지 어떤 경로로 연락이 닿았는지 정리했다
- ☐ 접촉 방식과 예상 기간을 정했다 (이메일·전화·화상, 제3국 대면 등)
- ☐ 물품이 있다면 품목명·수량·용도·가액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 ☐ 품목이 전략물자나 제재 품목에 해당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 ☐ 방북이라면 초청 의사를 확인할 문서가 있는지 확인했다
- ☐ 협력사업이라면 사업계획서 초안과 자원 조달 계획이 있다
- ☐ 기금 지원을 생각한다면 자체 자원 비율과 분배투명성 확보 방법을 정리했다
- ☐ 일정에 처리 기간(7일~20일 내외)과 보완 기간을 넣었다

문의처

신고·승인 접수와 심사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tongtong.go.kr
기금 신청	인도협력시스템 hairo.unikorea.go.kr · 한국수출입은행
법령과 서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절차 확인과 서류 준비 상담	남북교류협력센터 1588-0303 (평일 09:00~18:00) · info@ikecc.org · ikecc.org/consult

이 안내서는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센터는 절차 확인과 서류 준비를 돕고, 신고·승인의 접수와 결정은 통일부 등 소관 기관이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받은 개인정보는 상담 종료 후 1년간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 2026 남북교류협력센터. 출처를 밝히면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